

<제 597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은행

◆ 2020년 신입행원 30여명 채용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4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정규직 신입행원 공채를 실시했다. 모집 분야는 중견행원(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초급행원(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이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채 방식으로 지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전형과 필기시험(NCS, 일반상식),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광주은행은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해 지역의 취업난 해소에 이바지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이상자를 대상으로 초급행원을 모집해 취업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보해양조

◆ ‘앞새주’ 라벨지에 QR코드 부착, 범죄예방 콘텐츠 제공



식품유형:소주 알코올함량:17.3% 제조일자:뚜껑 또는 라벨 품목제조보고번호:2013001915041 원재료명 및 함량:정제수,주정, 혼합제제(효소처리스테비아,토마틴),메이플시럽(캐나다산) 보관방법: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병파손주의, 부정 불량 식품신고는 국번없이 1399 소비자상담실:080-585-3111, www.bohae.co.kr 라벨:종이/뚜껑:AL 공병 100원 환불

경고지니 음주는 비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차폐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19 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전남지방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앞새주 소주병의 QR코드를 이용,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정보를 알리는 언택트 치안활동을 펼친다.

앞새주 소주병 뒷면 라벨에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QR코드를 넣기로 전남지방경찰청과 합의를 통해 이달부터 생산·판매되는 소주 50만병에 라벨을 부착 판매하기로 했다.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보를 담은 카드 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있는 홈페이지와 연결된다.

## II. 광주경충 소식

사무국 일지 (09.07 ~ 09.11)	
09.07(월) *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장 점검(~11)	09.10(목)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편 논의 회의 참석
09.08(화) * 광주형일자리 주거지원 간담회 참석	

## 1. 노사 동향

### ■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 정부는 9. 8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올해 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

#### [ 참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정부 입법안 주요 내용

-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당연 적용
  - 구체적 적용 대상 특수형태종사자 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
- ▲ 고용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
  - 구체적인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

- 한편, 경총은 금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경영계와 특수형태근로 직종의 사업주 측이 거듭 요청한 당연 가입 요건 완화,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등 핵심 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 표명(9. 8)

### ■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에 ‘고용안정대책 요구안’ 전달(9. 8)

-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안정대책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정책위원장,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

- ‘고용안정대책 요구안’에는 ▲총고용 유지·보장·해고금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등 내용 포함
- 한국노총은 총고용 유지·보장·해고금지와 관련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고금지 혹은 해고 중단 선언 등 기업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또한 한국노총은 “해고금지법을 조기 입법하거나,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재정지원 요건에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야 하며, 정부가 사용자단체에 해고중단을 권고하고 사용자단체는 회원사들에게 이를 지침으로 시달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 민주노총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을 촉구하는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 개최(9. 9)
- 민주노총은 현행 법규상 산재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산재사망이 반복된다고 주장하며 ▲최고경영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 민주노총은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과 9. 1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9. 25까지 10만명의 청원 동의를 얻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할 계획

## 2. 판례 동향

산별노조 조합원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경비원 등에게 상해를 가하는 수준의 행위 없이 개별기업의 집회에 참여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이므로 무죄라고 판단함(대법원 2020.7.9. 선고, 2015도6173).

### 1. 사실관계

-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는 사용자인 회사(이하 'A사')와 사이에 산업별 노동조합 단위 중앙교섭사항, 충남지부 단위 집단교섭사항, A사 아산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단위 보충교섭사항에 관해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섭이 결렬됨.
  - 이 사건 지회는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고, A사 정문 안쪽에서 사내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함.
- 금속노조 충남지부 및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사건 피고인)은 A사 아산공장 부근에서 전국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A사 아산공장 정문을 통하여 공장 내 주차장에 들어감.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약 25분 간 구호 및 파업가를 제창한 후 곧바로 아산공장 밖으로 퇴거하였음.
  - 피고인들이 아산공장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경비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음.
- 원심(대전지방법원 2015.4.9. 선고 2014노1799 판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함.

## 2. 판결요지

-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함.
  - 이 사건 지회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은 단체교섭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님.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참여 방식, 집회 이후 사정 및 금속노조 충남지부 차원에서는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집회 참여행위는 이 사건 지회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지원·조력하기 위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피고인들이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의 아산공장 출입 방식이나 절차를 정한 노사간의 합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아산공장 출입으로 A사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피고인들이 아산공장 내에서 머무른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해 보면, 출입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로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주거침입죄)이며, 이를 전제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도 무죄(업무방해죄)로 판단함.

## 3. 시사점

- 금번 판결은 사업장 내 조합 활동에 대하여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대법원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하고,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는 입장(서울고등법원 2008.2.11. 자 2007라397 결정 참조)을 염두한 판단으로 보임.

- 특히, 산별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이 특정 사업장에 출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활동과 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특정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되고 그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은 단체협약에서 따로 출입을 허용하는 등 별도의 규정을 둔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집회 참여가 있었던 경위, 참여 방식, 집회 참여 이후 사정,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 동 판결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 외에도 아래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이 사건에서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지회가 주체가 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회 등이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진 독립된 조직체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함.
  - A사는 이 사건 지회와 개별적으로 보충 교섭을 한 것 외에도 피고인들이 소속된 지부 단위의 집단교섭, 산별노조 단위의 중앙교섭 등 대각선교섭을 진행함.
- 금번 판례를 비롯하여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를 인정한 판례(1990.05.15 선고, 대법90도357 판결 참조) 등이 형성한 법리는 기업의 경영권·시설관리권 등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영업방해, 시설파괴,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바,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는 주체·시설의 형태 등과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음. 끝.